하천변 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

하천변 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


- 1. 행정예고 할 내용 : 하천변 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
- 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 -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변 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를 설치하고자 함.
- 3. 관련근거
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(관계기관의 의견청취)
- 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. 4. 26. ~ 2024. 5. 16.(20일간)
- 5. 설치장소

시설종류	시 설 위 치	비고
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	양주시 마전동 118-26(장춘교차로)	
	양주시 남방동 83-2	
	양주시 남방동 179-4	
	양주시 마전동 456-7	
	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37-6	
	양주시 용암리 560-3	
	양주시 용암리 552-24	

시설종류	시 설 위 치	비고
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	양주시 용암리 214-7	
	양주시 용암리 239-3	
	양주시 광적면 가납리710	
	양주시 광적면 석우리29-1	
	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-22	
	양주시 덕정동 513-15	
	양주시 봉양동 850-25	
	양주시 옥정동 972	
	양주시 옥정동 972-1	
	양주시 옥정동 972-2	

6. 의견제출

-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 안전건설과로 방문,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의견제출기간: 2024. 5. 16.까지
 - 나. 의견제출내용
 - 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 - 다. 의견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1) 우편 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양주시청 안전건설과)
 - 2) 전화·팩스: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☎ 031-8082-6781 / FAX 0505-041-0854
 - 라. 문의 및 제출방법 :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자연재난팀 (☎ 031-8082-6781)
 - 마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		주	민	의	견	제	출	서	
사 업 명			하천변	자동차	단시설	및 기	대난영상	감시 CCTV	설치
	성 (개인	명 /단체)					생년월일		
의견 제출자		소					전화번호		
설치예정위치		,			검토의	의견 (의견제출	내용)	
하천변 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									
제출합니다.									
				2024	크 월	일			
						_ 출 자			(서명 또는 인)
					- 41				
양 주 시 장 귀 하									